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 의 · 의 결

안건번호 제2020 - 38 - 175호

안 건 명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표이사

의 결 일 2020. 6. 24.

### 주 문

1.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'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', '유출등이 발생한 시점', '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',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', '이용자가 상담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'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
2.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
3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금 액 : 10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라.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, 제52조,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

## 이 유

### I. 기초 사실

1. (이하 '피심인'이라 한다)는 영리를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컨퍼런스 및 교육 제공 등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통신망법'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,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대표이사	설립일자	자본금	주요서비스	종업원 수

#### <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평균
매출액				

※ 자료 출처 :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대상

2.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(i-privacy.kr)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를 조사 하였고,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(2019. 11. 1.)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3. 피심인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컨퍼런스 및 교육 제공 등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, 2019. 10. 31.현재 아래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#### <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이용자정보	이름, 주소, 이동전화번호, 이메일		건

#### 나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##### 1) 개인정보 유출 경과 및 대응

- 2019. 7. 3. 08:15 메일발송 직원의 담당 매니저(상급자)가 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메일발송 오류(실수) 확인 및 담당자 확인 요청
- 2019. 7. 3. 08:30 메일발송 직원이 발송상태 확인을 통해 이메일 유출 사실 인지
- 2019. 7. 3. 12:59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실 이용자 통지(메일 발송)



- 2019. 7. 4. 19:14 개인정보보호 포털(i-privacy.kr)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

## 2) 개인정보 유출 규모

4. 피심인이 서비스 관련행사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이용자 1,510명의 이메일이 유출되었다.

<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>

구분	유출항목	유출건수
이용자정보	이메일	1,510

## 3) 유출 경로

5. 피심인은 온라인 컨퍼런스 관련 행사 소개를 위해 관련 대상 이용자에게 이메일 발송 시 전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'참조' 란에 기재하고 '숨김' 기능 설정 없이 발송하여 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.

## 3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

### 가.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 사실을 지연 통지·신고한 행위

6. 피심인은 2019. 7. 3. 08:15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후 발송 담당자의 메일 발송 내역을 확인하여 수신자 명단을 확보하였고, 2019. 7. 3. 12:59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였으며, 24시간을 경과하여 2019. 7. 4. 19: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(i-privacy.kr)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.

### 나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

7.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. 5. 1. '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(안)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2020. 5. 27.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III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- 가.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“유출등“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8.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·서면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2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·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·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·신고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9. '정보통신망법 해설서'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의 '지체 없이'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, 관련 판례에서는 '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'로 해석하고 있다.

나.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“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,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,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 사실을 지연 신고{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)}한 행위

10. 피심인이 '19. 7. 3. 08:15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후 발송 담당자의 메일 발송 내역을 확인하여 수신자 명단을 확보하였고, '19. 7. 3. 12:59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였으나, 24시간을 경과하여 '19. 7. 4. 19: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(i-privacy.kr)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 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사업자 명	위반 내용	법령 근거		
	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
	지연 신고	§27조의3①	§14조의2①	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지연신고 한 행위

## IV. 시정조치 명령

### 1. 시정명령

11.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'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', '유출등이 발생한 시점', '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',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', '이용자



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'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

## 2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

12.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V. 과태료 부과

13.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)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[별표 9] 및 「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」(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 가. 기준금액

14.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[별표 9]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,000만원을 적용한다.

〈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〉

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하. 법 제27조의3제1항(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·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	법 제76조 제1항제2호의3	1,000	2,000	3,000

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1) (과태료의 가중)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▲증거인멸, 조작,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15.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.

2) (과태료의 감경)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▲당사자 환경, ▲사업규모와 자금사정, ▲개인(위치)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16.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조문	기준금액	가중	감경	최종 과태료
§27의3①	1,000만원	없음	없음	1,000만원
계				1,000만원



다. 최종 과태료

17.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0,000,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VI. 결론

18.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(시정명령) 및 제76조제1항(과태료)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19.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20.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21.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

2020년 6월 24일

위원장	한 상 혁	(인)
부위원장	표 철 수	(인)
위원	허 욱	(인)
위원	김 창 룡	(인)
위원	안 형 환	(인)

